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423호 2019. 3. 4(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3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34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 ----- 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4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4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398호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정보공개 ----- 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02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8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3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4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3.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 당하동 검단신도시 AB4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대방건설(주) (대표 구찬우)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4블록
 - 나. 대지면적 : 69,448㎡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221,097.4742㎡ (지하2층, 지상19~25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15개동 1,279세대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 마. 사 업 비 : 557,402,785천원
4. 사업기간 : 2019. 03. 04. ~ 2022. 03. 03.
5. 변경사항
 - 가. 연면적 변경(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실 등 변경)
 - 기존 : 연면적 222,390.1418㎡

- 변경 : 연면적 221,097.4742m²

나. 주차대수 변경

- 기존 : 1,865대

- 변경 : 1,884대

다. 사업기간 변경 등

- 기존 : 2019. 02. 14. ~ 2021. 11. 13.

- 변경 : 2019. 03. 04. ~ 2022. 03. 03.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34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3.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나진포천(지방하천)
 - 가. 허가 번호: 제2019 - 06호
 - 나. 허가년월일: 2019. 2. 25.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인천도시가스(주)
 - 나.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394번길 **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도시가스관 매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인천 서구 마전동 399-17번지 외 4필지
 - 나. 면 적: 89.65㎡(공사면적), 35.39㎡(매설면적)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2. 25. ~ 2023. 12. 31.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4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3.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중봉대로 278 외 1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도 열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03.04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9-03-04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0-160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278 (석남동)	20090706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금산 싸움에서 7백 의병과 함께 전사한 조현선생의 호를 따서 제명	
2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10-11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58 (석남동)	20090922	가정동의 동명을 따. 가정동이란 명칭은 조선조 개국공신 조반이 말년에 이 곳에 와서 佳亭이란 정자를 세운 것에서 유	
3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84-4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02번길 9 (마전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47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28번길 24-31 (왕길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478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28번길 24-28 (왕길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46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28번길 24-44 (왕길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466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28번길 24-41 (왕길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471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28번길 24-35 (왕길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479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28번길 24-27 (왕길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467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28번길 24-42 (왕길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464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28번길 24-39 (왕길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477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28번길 24-37 (왕길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465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28번길 24-40 (왕길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475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28번길 24-30 (왕길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469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28번길 24-29 (왕길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473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28번길 24-34 (왕길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19-7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464번길 15 (가정동)	20160701	염곡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6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9-398호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정보공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에서 시행 중인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0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법 제29조에 따른 계약금액과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보공개서

2019. 3.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별지 제5호서식]

정비사업 정보공개서

1. 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

위 치	인천시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		
구역 면적	53,855.00㎡	구역 지정일자	2017. 03. 27.
용도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조합설립인가일자	2012. 01. 19.	조합원수	701명
사업시행인가일자	2018. 02. 13.	사업시행변경일자	
사업시행자	명칭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박보현)	
	사무소소재지	인천시 서구 열우물로240번길 26 (전화 : 032-574-3321)	

2. 사업계획 개요

대지면적	35,564.00㎡	연면적	166,089.51㎡
건 폐 율	16.41%	용적률	298.91%
세대수	세대 (분양 임대 기타)		
평형 및 세대수	49㎡A형 273세대, 59㎡A형 252세대, 59㎡B형 200세대 69㎡A형 215세대, 84㎡A형 164세대, 84㎡B형 114세대		

3. 시공자의 공사비(단위 : 백만원)

시공자	선정구분	업체명	선정일자	입찰금액	계약일자	계약금액	공사기간
	최초	일성건설(주)	2016. 03. 19.	188,060	2016. 04. 08.	18,806	2019. 09. 01.~2022. 09. 30.
	1차변경						~
	2차변경						~
계약변경	변경일자		계약금액		변경사유		
계약내용	구분	내용(구체적으로 기재)					
	건축공사	입찰당시 일괄로 입찰					
	철거공사						
	기타공사						
	기반시설공사	입찰당시 기반시설공사는 시공자 공사범위에서 제외					
	이주비지원	조합원들의 이주비대출에 따른 이자는 시공자가 부담					
	기타 주요계약내용	사업경비 대여금(무이자) : 55억원, 상환조건 : 분양수익금으로 상환					

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

관리처분계획인가	구분	인가일자	구분	인가일자
	최초	2018. 12. 27.	3차변경	
	1차변경		4차변경	
	2차변경		5차변경	
정비사업 발생이자	정비사업비 내용	발생이자		이자발생 사유
	사업비대출 이자	1,800		정비사업비 대출
	중도금대출 이자	7,935		(조합원,일반)중도금대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5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2019년 3월 4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9-402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19.03.04. ~ 2019.03.18.(15일간)
2. 공 고 내 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57우4000외 17건(붙임 참조)	
	차 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교통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4872, FAX 032-560-2793)	

3. 유의사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구청 교통민원과 차량관리팀 (☎ 032-560-48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비고
1	57우4000	여하*	2019.02.28	
2	86도2313	박숙*	2019.02.25	
3	31도8429	김재*	2019.02.22	
4	02로2854	김봉*	2019.02.20	
5	42부3433	정유*	2019.02.18	
6	09소0111	이호*	2019.02.15	
7	26저8001	이동*	2019.02.15	
8	09너9431	이동*	2019.02.15	
9	68가7390	원영*	2019.02.14	
10	14가6562	박기*	2019.02.14	
11	강원80도1244	이성*	2019.02.13	
12	89도3094	김봉*	2019.02.13	
13	06서7928	배윤*	2019.02.13	
14	경기83라7396	김봉*	2019.02.13	
15	강원2가8892	이성*	2019.02.13	
16	40루7893	김봉*	2019.02.13	
17	10라4391	최송*	2019.02.12	
18	07너3450	*** ZHENGZHE	2019.02.07	차량이전 (2019.02.17. 운행정지해제)